

## 연봉제 직원 보수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급여를 연봉제 직원으로 임용하는 성결대학교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되는 일반직 및 기술직 직원에게 적용된다.

② 연봉제 직원 보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 규정 2장을 적용한다.

**제3조 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연봉제”라 함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도를 의미한다.
- ② “연봉”이라 함은 1년간 지급되는 보수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
- ③ “기본급”이라 함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.
- ④ “성과급”이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.
- ⑤ “연봉월액”이라 함은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⑥ “본봉”이라 함은 연봉월액의 30%를 말하며, “봉급”이라 함은 연봉월액의 40%를 말한다.
- ⑦ “초임연봉”이라 함은 임용 될 때 최초로 확정된 호봉의 연봉액을 말한다.
- ⑧ “경력년수”이라 함은 근무 또는 연구경력 년수를 말한다.
- ⑨ “수당”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
**제4조 (연봉)** ① 직원에게 그 자격과 경력 및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.

② “연봉”의 구성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하며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 (기본급 결정)** ①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.

② 2019년 3월 이후에 신규 임용된 일반직 및 기술직원에게는 <표 1>과 같이 급여를 지급한다.

③ 2019년 3월 전에 신규 임용된 일반직 및 기술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효도휴가비 및 기타 제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**제6조 (연봉의 지급)**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,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.

**제7조 (연봉 등의 계산)** ① 신규채용, 승진, 전보, 감봉,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## 연봉제 직원 보수 규정(5-2-12)

② 호봉에 따른 직원 연봉표 <표 1>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연봉월액을 지급한다.

**제8조 (연봉의 조정)** ① 휴직,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조정한다.

② 연봉 계약에 따라 매년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보수규정 제12조(승급)을 원칙으로 하며, 승급월이 연봉계약 기간을 초과할 경우 승급월이 도래할 때까지 기존 연봉월액을 지급한다.

**제9조 (초임호봉)** ① 직원의 초임호봉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
② 직원의 초임호봉 확정은 직원 인사 규정 별표 3(직원 경력연수 환산표)에 의하여 산출한 경력에 따라 정하되 연봉산정 기준호봉 상한범위 내에서 연봉월액을 산정한다.

**제10조 (연봉계약)** ① 연봉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

② 계약의 당사자는 총장과 직원 개인이 되며 계약을 체결한다. 다만,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연봉결정통보)** 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원별 연봉이 결정되면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직원 개인에게 연봉을 서면상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.

② 연봉을 통보받은 직원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봉계약이 최종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12조 (보직수당)** 직원이 보수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직에 보임될 때는 보수규정의 보직수당을 지급한다.

**제13조 (겸직수당)** 직원이 보직을 겸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겸직의 보직수당이 본직보다 많을 때는 겸직의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.

**제14조 (성과급)** 성과 업무에 따른 인센티브 및 취업수당 등 성과급을 지급하며,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
**제15조 (세부사항)** 이 규정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